

자활사업 발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협약서

(재)중앙자활센터(이하 '중앙자활센터')와 사회적기업 (주)송지(이하 '송지')는 상호신뢰와 우호관계를 기초로 자활사업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

제 1 조 【협약의 목적】

본 협약은 중앙자활센터와 송지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 업무협력을 통해 정보제공, 업무 연계 및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활사업 발전방향 다각화, 대표적 자활사업 모델 육성 및 사회적경제의 모범적 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 2 조 【협약의 내용】

중앙자활센터와 송지는 협약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아래의 업무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이행하여야 한다

1. 사회적경제연계형 소셜 프랜차이즈 자활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 협력
2. 자활사업 발전방향 다각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
3. 상기 1, 2항 추진을 위한 상호 보유 콘텐츠 교류
4. 상기 1, 2항 추진을 위한 홍보, 마케팅 공동 수행
5. 기타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업무
6. 사안별 세부 협력사항은 실무자간 별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다.

제 3 조 【업무협력 추진방법】

1. 업무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한 정보교환은 일차적으로 각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서 시행한다
2. 당사자 간 관심분야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이 필요할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추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

제 4 조 【보안】

1. 본 협약서에 의해 교환되는 비밀정보 및 문서는 당사자 간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여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

2.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정보는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
3. 위에 명시한 보안의 의무는 본 협약 효력 종료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

제 5 조 【유효 기간】

1.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된다.
2.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,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 별도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12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

제 6 조 【협약의 해지】

중앙자활센터, 송지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해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방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특별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
2. 부도, 파산, 해산 및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

제 7 조 【기타 사항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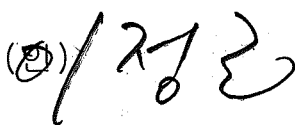
1. 본 협약의 일부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2.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

본 협약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,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

2013년 12월 26일

(재) 중앙자활센터
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126-1
일흥빌딩 7층

원 장 이 정 근 (인)



(주) 송지
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-37
토투밸리 400호

대표이사 황 영 희 (인)

